

「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이 설치한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11.07.15.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나,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과제 선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정비 요청
-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도모함. (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우))

- 보훈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해 「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8조(입장료 감면)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- 본 조례안은

‘평창군 효석문학의 숲’의 입장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가족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분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은

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

‘주민등록이 되어 있는’을 ‘주소를 두고 있는’으로 변경하고

안 제8조제2항의 입장료 전액 면제 대상은

그린카드 소지자, 다자녀 가정, 국가 유공자의 가족, 독립·참전·5.18민주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였음.

- 검토결과,

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분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8조제1항 제1호 중 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”을 “주소를 두고 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.

1.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3.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
4. 만 6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 가정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6. 효석문학의 숲 내에 있는 충주집을 이용하는 사람
7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,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9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10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11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

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
12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1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1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
15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
16.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8조(입장료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50%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<u>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단순통행자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</u></p> <p>4. 만 6세 이하 어린이와 <u>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</u></p> <p>5. <u>장애인 및 국가유공자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8조(입장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 <u>주소를 두고 있는</u> ----- 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면제한다.</u>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린카드 소지한 사람</u></p> <p>4. ----- ----- <u>다자녀 가정</u></p> <p>5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한국숲사랑청</p> |

<신 설>

- 소년단의 단원,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9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10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11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12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1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1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

<신 설>

7. (생 략)

15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
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

16. (현행 제7호와 같음)